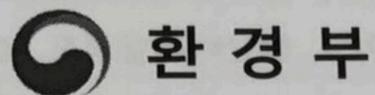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시행 방안

2018. 3. 28.



목 차

1.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추진 근거
2.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
3.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안)
4. 유상할당 물량의 경매 방식(안)
5. 경매 수익 활용 방향
6. 향후 추진일정

1. 2차 계획기간 무상할당 추진 근거

시행령

- 제13조(배출권의 무상할당비율 등) ①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차 계획기간(이하 "1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한다.
 - ② 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2차 계획기간(이하 "2차 계획기간"이라 한다)에는 할당대상업체별로 할당되는 배출권의 100분의 97을 무상으로 할당한다.
 - ③ 3차 계획기간 이후의 무상할당비율은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이전 계획기간의 평가 및 관련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할당계획에서 정한다. 이 경우 할당계획에서 정하는 무상할당비율은 직전 계획기간의 무상할당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 2차 계획기간('18~'20) 운영방향
 - (유상할당) 무역집약도 30% 미만이고, 생산비용발생도 30% 미만 업종에 해당하는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량의 3% 유상할당

2.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

무상할당 기준- 시행령 제14조 및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

- 시행령 제14조에 명시된 무상할당 업종의 기준에 부합하는 업종은 100% 무상할당 적용
 - ① 무역집약도 30% 이상 또는,
 - ② 생산비용발생도 30% 이상 또는,
 - ③ 무역집약도 10% 이상 및 생산비용발생도 5% 이상
- 무역집약도 = $\frac{\text{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출액} + \text{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text{해당 업종의 연평균 매출액} + \text{해당 업종의 연평균 수입액}}$
- 생산비용발생도 = $\frac{\text{해당 업종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times \text{배출권 가격}}{\text{해당 업종의 연평균 부가가치 생산액}}$

업종 분류 기준

- 2차 계획기간에는 업종의 경제적 특성, 산업계의 입장 등을 반영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를 기준으로 업종 분류를 세분화
 - KSIC 소분류 총 228개 중에서 할당대상업체가 속한 소분류는 63개 업종
 - 할당대상업체별 KSIC 소분류는 2차 계획기간 할당대상업체 지정·고시에 근거 ('17.11.16)

2.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가)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단,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기준기간은 '15년~'16년으로 한다

매출액 및 부가가치생산액

-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자료(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13~'15년 통계 자료

수출액 및 수입액

- 관세청 수출입신고 자료와 통계청 기업생멸통계를 연계하여 KSIC 분류에 따라 영리기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13~'15년 통계 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 GIR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NGMS)에서 집계하는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의 '13~'15년 배출량 통계 자료

배출권 가격

- '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장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장내(거래소)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 거래가격 (16,772원/톤)

3.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기준

지정업종	소분류	소분류명	지정업종	소분류	소분류명
발전에너지	351	전기업	목재	162	나무제품 제조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제지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광업	051	석탄 광업
071	토사석 광업	석유화학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음식료품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섬유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유리	231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요업	232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시멘트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철강	241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주조	243	금속 주조업

2. 무상할당 업종 선정기준과 방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의 가) 기준기간이란 매 계획기간 시작 5년 전부터 3년 동안을 말한다
단, 2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 기준기간은 '15년~'16년으로 한다

매출액 및 부가가치생산액

- 국세청에 제출하는 법인세 신고자료(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13~'15년 통계 자료

수출액 및 수입액

- 관세청 수출입신고 자료와 통계청 기업생멸통계를 연계하여 KSIC 분류에 따라 영리기업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13~'15년 통계 자료

온실가스 배출량

- GIR의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시스템(NGMS)에서 집계하는 할당대상업체와 목표관리업체의 '13~'15년 배출량 통계 자료

배출권 가격

- '15년 1월 12일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 시장 개장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장내(거래소) 거래된 할당배출권(KAU)의 평균 거래가격 (16,772원/톤)

3.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기준

지정업종	소분류	소분류명	지정업종	소분류	소분류명	
발전에너지	351	전기업	목재	162	나무제품 제조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제지	17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집단에너지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17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산업단지			광업	051	석탄 광업	정유
음식료품	071	토사석 광업	석유화학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10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202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04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20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105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106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211	기초 의약품질 및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107	기타 식품 제조업		212	의약품 제조업	
	111	알콜음료 제조업		221	고무제품 제조업	
	1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222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20	담배 제조업		유리	231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섬유	131		방직 및 가공사 제조업	요업	232
134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시멘트	233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205		화학섬유 제조업	철강	241	1차 철강 제조업	
			비철금속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주조	243	금속 주조업	

3. 무상할당 물량 산정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안)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소분류 기준

지정업종	소분류	소분류명
기계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 제조업
반도체	261	반도체 제조업
디스플레이	262	전자부품 제조업
전기전자	282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5	가정용 기기 제조업
자동차	301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303	자동차 부품 제조업
조선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통신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지정업종	소분류	소분류명
수도	360	수도사업
폐기물	370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82	폐기물 처리업
항공	511	정기 항공 운송업
	529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건물	471	종합 소매업
	551	숙박시설 운영업
	651	보험업
	681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682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853	고등 교육기관
	861	병원
	912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4. 유상할당 물량의 경매방식(안)

유상할당 계획 및 입찰 공고

- 환경부장관은 매 이행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연간 유상할당 계획을 공표
- 연간 유상할당 계획에 따른 매회 유상할당 경매 개시 5일 전에 일시 등 세부사항을 공고 (입찰일시, 할당규모, 입찰방식, 입찰조건, 대금 결제 등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고)

경매 입찰 일시 / 장소

- 매 월 둘째 수요일 13:00 ~ 14:00에 정기적으로 입찰 실시
- 입찰은 배출권거래소의 호가 입력 프로그램을 통한 전산 처리

경매 입찰 참가 대상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전부 무상할당 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체

4. 유상할당 물량의 경매방식(안)



입찰 및 낙찰 방법

- (응찰 최저수량) 응찰 최저수량은 1,000톤으로 하고, 100톤의 정수배로 증량
- (낙찰 하한가) 배출권 경매가격의 공정한 형성을 위하여 낙찰 하한가를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하한가에 미치지 못하는 응찰은 무효
- (낙찰수량 상한) 해당 입찰일의 입찰예정 배출권 수량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낙찰수량의 총합이 총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추가 배정 가능
- (낙찰 순서) 유상할당업체의 낙찰은 응찰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의 수량부터 총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결정
- (낙찰가격) 낙찰 대상 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
- (납입 및 이전) 낙찰금액의 납입 및 배출권의 이전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과 온실가스종합정보 센터의 배출권등록부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일 당일에 이행
- (결과 공개) 입찰, 응찰, 낙찰수량 및 낙찰가격을 포함하여 거래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공고

5. 경매 수익 활용 방향



해외 사례



유럽연합

- 각국 별로 경매수익의 최소 50% 이상은 기후 및 에너지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유럽집행위원회에서 규정



캘리포니아

- 경매 수익금으로 온실가스 저감기금을 조성, 기금의 60%는 저탄소 대중교통, 초고속열차, 주택마련 등의 용도로 활용



퀘벡

- 모든 경매수익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Green Fund에 투입, '20년까지 33억 캐나다달러 규모로 집행할 계획

향후 계획

- 유상할당,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논의 후 확정

6. 향후 추진일정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유·무상할당 판단을 위한 업종 분류체계 구분(안)에 대한 의견 수렴
- BM 할당방식 및 GF 감축실적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배출허용총량, 감축률 설정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5월경 할당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추진 예정(유·무상할당 업종 공개)

제2차 계획기간 2단계 할당계획 확정

- 할당위원회('18.5월말) → 녹색성장위원회('18.6월중) → 차관·국무회의('18.6월말)

업체별 할당

- 할당 신청서 접수('18.8월) → 할당량 통보('18.10월) → 이의신청('18.11월) → 최종 확정('18.12월)

Q&A